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양진호 의원 외 10명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양진오 · 강승수 · 김춘남 · 김태근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장미경 · 장세구 · 이지연 의원
(11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마.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7조)
- 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4. 21. ~ 4. 28.)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구미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9. 생략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 7. 생략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 조례안 제17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정확한 추계는 어려움
- 구미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위원회 참석수당	구미시 여성농업인육성 심의위원회	70천원×5명×2회	700천원

4. 작성자

- 농정과 농정기획계 정승원(054-480-5762)